

5. 상품매도 순서 지정

매도순위	상품명	계좌번호	매도금액(원/좌)

[안내사항]

-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급여지급 처리 지연시 지연보상금 지급 안내.**
 - 은행은 퇴직연금 계약서(운용관리 및 자산관리)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금전으로 지연보상금을 지급합니다.
 - ▶ 확정급여형 : 회사(사용자) ▶ 확정기여형, 기업형IRP 및 개인형IRP : 근로자 또는 가입자
 - 지연보상금은 급여지급 신청일(신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)을 포함하여 3영업일^{주1)}을 초과한 경우 발생하며, 급여지급 신청금액에 지연기간에 따른 이율^{주2)}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. 단,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 되었을 경우 정상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.
 - 주1)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(단,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다른 경우 5영업일)
 - 주2) 지연기간이 14일 이내 : 연 10%, 지연기간이 14일 초과 : 연 20%
 - 본인은 상기 지연보상금에 대한 설명(지연보상금 지급 기준 운용지시기일 및 적용이율)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
- 전부이전인 경우 퇴직연금 수수료 납부(DB-적립금 차감/DC-기업형IRP-별도납부)가 완료된 후 지급처리 됩니다.**
- 일반중도해지 사유 거래인 경우 상품별 만기도래 전에 계약이전 거래시 이자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**

[제출서류]

DB, DC 전부이전시	DB, DC 일부이전시	DB 금액이전시
1.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서 (명판 및 날인 필수) 2. (변경)규약 및 수리통보서 사본 3. 퇴직연금 계약이전 동의서 4. 이전받을 금융기관의 계약이전 요청공문 및 해당 금융기관 통장사본 (기업의 퇴직연금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경우 해당계좌 통장사본)	1.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서 (명판 및 날인 필수) 2. (변경)규약 및 수리통보서 사본 3. 이전받을 금융기관의 계약이전 요청 공문 및 해당 금융기관 통장사본 (기업의 퇴직연금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경우 해당계좌 통장사본)	1.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서 (명판 및 날인 필수) 2. (변경)규약 및 수리통보서 사본 3. 이전받을 금융기관의 계약이전 요청 공문 및 해당 금융기관 통장사본 (기업의 퇴직연금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경우 해당계좌 통장사본)

